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

1. 2005. 10. 31. 제2005-462호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결정)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공무원이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등이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공무원연금법 제16조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무주택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택마련 지원사업은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후생복지사업에 해당되며, 동법 제16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에서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을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중에 있다면 공무원후생복지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주택세대주인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들의 분양권 전매로 인해 건축중인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경우는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는 것이므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건축중인 공동주택을 사용검사일 이전에 제3자에게 전매하였다고 할지라도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분양 자체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연금수급권자의 아파트분양분에 있어서 공무원연금수급권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들에 대한 아파트분양도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해당하며, 아파트 미분양분의 경우도 사실

상 청구인이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의 3필지 토지 26,031.8㎡중 ●●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된 구 ○○상업학교 본관면적 674.82㎡는 ●●광역시●구 구세감면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고, 그 외의 25,356.98㎡(아파트 건립부지 22,328.22㎡, 오피스텔 및 업무판매시설 건립부지 3,028.7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보아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종합토지세 87,170,480원, 도시계획세 32,980,890원, 지방교육세 17,434,090원, 농어촌특별세 12,927,860원, 합계 150,513,320원을 2004. 12. 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982. 2. 1. 설립된 특수비영리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

연금법의 목적인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 제16조(공단의 사업)에 청구인의 목적사업으로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74조(기금의 관리·운용)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청구인의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중식사업 또는 후생복지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에서 법 제7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중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다음의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이라고 규정하고,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의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보수수준이 낮아 생계비에 미흡한 수준인 중·하위 공무원의 생계비 보장차원의 보완적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생활복지사업과 공무원의 건강 및 품위유지 차원의 문화복지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목적사업 중 무주택 세대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택마련 지원사업은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후생복지 사업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26,031.8㎡중에서 오피스텔 및 업무판매시설 건립부지인 3,028.76㎡를 제외한 공무원아파트 건립부지인 22,328.22㎡에 대해서 2004. 6. 1. 현재 일반인 분양분(3,456.97㎡)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18,871.25㎡(공무원분양분 6,353.24㎡, 공무원의 분양권전매분 2,776.83㎡,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분양분 2,137.36㎡, 미분양분 7,603.82㎡)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 150,513,320원 중에서 이의신청 결과 종합토지세가 면제로 결정된 공무원분양분(6,353.24㎡)을 제외한 공무원의 분양권전매분 등 12,518.01㎡에 대해서도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공무원이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등이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3조제2항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제5호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공무원연금법 제16조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을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을, 그 제4호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이라고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에서 공무원연금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다음의 사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 부동산의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1882. 2. 1.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03. 4. 16. ○○시로부터 ○○시 ○○구 ○○동 ○○번지의 3필지에 아파트 843세대, 오피스텔 144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4. 6. 1. 현재 공무원분양분 268세대(6,353.24㎡), 공무원의 분양권전매분 126세대(2,776.83㎡), 공무원연금수급권자 분양분 79세대(2,137.36㎡), 미분양 225세대(7,603.82㎡), 일반인분양분 145세대(3,456.97㎡)를 분양하고 오피스텔 및 업무판매시설 건립분 144세대(3,028.76㎡)가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전체 토지 26,031.8㎡ 중에서 ●●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8호로 지

정된 구 ○○학교 본관면적 674.82㎡는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고, 그 외의 토지 25,356.98㎡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보아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 경감하여 부과하였고, 2005. 5. 31. ●●광역시 ●구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서 공무원분양분 268세대(6,353.24㎡)에 대해서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음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982. 2. 1. 설립된 특수비영리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인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 제16조(공단의 사업)에 청구인의 목적사업으로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74조(기금의 관리·운용)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청구인의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후생복지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에서 법 제7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다음의 사업으로 한대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이라고 규정하고,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의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보수수준이 낮아 생계비에 미흡한 수준인 중·하위 공무원의

생계비 보장차원의 보완적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생활복지사업과 공무원의 건강 및 품위유지 차원의 문화복지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목적사업 중 무주택 세대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택마련 지원사업은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후생복지사업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26,031.8㎡ 중에서 오피스텔 및 업무판매시설 건립부지 3,028.76㎡를 제외한 공무원아파트 건립부지인 22,328.22㎡에 대해서 2004. 6. 1. 현재 일반인 분양분(3,456.97㎡)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18,871.25㎡(공무원분양분 6,353.24㎡, 공무원의 분양권전매분 2,776.83㎡, 공무원연금수급권자의 분양분 2,137.36㎡, 미분양분 7,603.82㎡)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 150,513,320원 중에서 이의신청 결과 종합토지세가 면제로 결정된 공무원분양분(6,353.24㎡)을 제외한 공무원의 분양권전매분 등 12,518.01㎡에 대해서도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공무원연금법 제16조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주택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택마련 지원사업은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후생복지사업에 해당되며, 동법 제16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에서 공무원

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 사업을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중에 있다면 공무원 후생복지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주택 세대주인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들의 분양권 전매로 인해 건축중인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경우는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는 것이므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건축중인 공동주택을 사용검사일 이전에 제3자에게 전매하였다고 할지라도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분양 자체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연금수급권자의 아파트분양분에 있어서 공무원연금수급권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들에 대한 아파트분양도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해당하며, 아파트 미분양분의 경우도 사실상 청구인이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해당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토지 26,031.8㎡ 중에서 ●●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된 구 ○○학교 본관면적 674.82㎡는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고, 그 외의 25,356.98㎡ 중에서 공무원분양분 268세대(6,353.24㎡), 공무원의 분양권전매분 126세대(2,776.83㎡), 공무원연금수급권자 분양분 79세대(2,137.36㎡), 미분양 225세대(7,603.82㎡)에 대해서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일반인 분양분 145세대(3,456.97㎡), 오피스텔 및 업무판매시설 건립분 144세대(3,028.76㎡)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보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에서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보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만을 경감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2005. 10. 31. 제2005-463호 (취득세 등 부과처분 기각)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목회자 자녀 등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결정요지】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

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예배, 축전,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에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두878, 2002. 10. 11)으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목회자 자녀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신앙생활을 의무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입사생은 단지 숙식만을 해결하고 있을 뿐 예배, 축전,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 등의 중추적인 종교활동은 개개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목회자 자녀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1998. 5. 30. ○○도 ○○시 ○○동 ○○번지 대지 342.1㎡를 취득한 후 2000. 8. 21. 그 지상에 건축물 341.64㎡(지상 2층, 대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 8. 21.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

여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각각 비과세하였으나, 그 후 확인결과 상시 종교활동에 공여되는 일반교회 건물과는 달리 목회자 자녀 등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335,272,727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046,540원, 농어촌특별세 737,590원, 등록세 5,726,610원, 지방교육세 1,049,870원, 합계 15,560,610원(가산세 포함)을 2005. 7. 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농어촌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및 빈곤층 자녀들의 숙식을 위한 장소와 국내외 선교사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는바, 교회의 선교사업은 복음전파를 통하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노력하는 것으로서, 이는 모든 교회에 부여된 사명이자 교회의 근본적 존재가치 그 자체이며 의무이자 사명인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장학선교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장학관은 선교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종교사업의 본질에 대한 사실 및 그 법리를 오인하고 선교사업을 축소 해석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목회자 자녀 등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 5. 30. 토지를 취득한 후 2000. 8. 21. 그 지상에 연면적 341.64㎡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다음 목회자 자녀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장학선교를 목적으로 목회자 자녀 등의 숙식을 위한 장소와 국내외 선교사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

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예배, 축전,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두878, 2002. 10. 11)인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목회자 자녀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신앙생활을 의무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입사생은 단지 숙식만을 해결하고 있을 뿐 예배, 축전,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 등의 중추적인 종교활동은 개개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목회자 자녀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2005. 10. 31. 제2005-466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하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러하지 아니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 4제2항에서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과세표준, 세액 기타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납입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납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납입신고서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축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판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 12. 24. 도축경영자인 청구의 ○○농역(대표자 이○○)의

사업(도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인 청구의 ○○농역이 신고납입하지 아니한 2004년도 12월분(12. 1.~12. 23) 도축세 43,536,440원(가산세 포함)에 대하여 2005. 1. 25.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입 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지우는 것이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하지 아니한 도축세 납세의무 확정일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라 할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양수일은 2004. 12. 24. 이고 처분청이 이 사건 도축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날은 2005. 1. 5.이므로 사업양도·양수 당시 양도인인 청구의 ○○농역의 이 사건 도축세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임에도, 사업양도·양수일 이전에 이 사건 도축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도축세 납입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고, 둘째, 대법원 판례(86누 255, 1986. 10. 28)에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으로부터 재산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자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의 ○○농역이 미지급한 공과금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영

업허가권과 미수 도축작업비를 인수하였을 뿐 영업허가권 양도·양수계약서상 사업에 관한 시설물에 관한 내용과 인적설비인 종업원의 인수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셋째,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으로, 영업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의 ○○농역에게 지급한 금액이 없을 뿐더러 청구인이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더라도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은 없다 하겠고,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사업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축세에 대한 납부촉구를 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무효인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도축세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4조제1항에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본문에서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제2호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제3호에서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3에서 도축세의 징수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되,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4조의4제1항에서 도축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경영자 기타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그 제2항 및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과세표준, 세액 기타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납입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납입신고서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 12. 23. 청구의 ○○농역과 영업허가권 양도·양수계약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도축업 관련 영업허가권과 지위 일체(도축업자로서의 모든 책임과 권한 포함) 및 2004. 12. 24. 현재 양도인인 청구의 ○○농역이 받을 미수 도축사업비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양도인이 납부할 2004년도 12월분 도축세와 폐기물 처리비 등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청구의 ○○농역은 도축업 관련 영업허가권을 일금 일억 이천만원(120,000,000원)에 양도하는 대신 유치권(●●지방법원 2003타경50×9 사건에 유치권 신고된 생체 자동이송기계)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04. 12. 24. ○○도지사로부터 도축장 지위승계 허가(축수산산림과-8×4)를 받은 사실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축장의 포괄적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 1. 25.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 및 2005. 1. 29. 이 사건 도축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양도·양수 당시 청구의 ○○농역의 이 사건 도축세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도축세 납입 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4. 12. 8. 도축경영자인 청구의 ○○농역이 임차사용하고 있던 청구의 ○○저축은행(주)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과 2004. 12. 23. 청구의 ○○농역과 도축업 관련 영업허가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 날인 2004. 12. 24. ○○도지사로부터 도축장 지위승계에 관한 허가증(제1-08호)을 교부받은 사실 및 청구의 ○○농역은 청구인에게 도축업 관련 영업허가권을 120,000,000원에 양도하는 대신

유치권(●●지방법원 2003타경50××9 사건에 유치권 신고된 생체자동이송기계)을 포기하고, 청구인은 도축업 관련 영업허가권과 2004. 12. 24. 현재 청구의 ○○농역이 받을 미수 도축사업비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청구의 ○○농역이 납부할 폐기물 처리비 등을 납부키로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2004. 12. 24. 청구의 ○○농역으로부터 도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지방세법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하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러하지 아니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4 제2항에서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과세표준, 세액 기타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납입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납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납입신고서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축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처분청은 특별징수의무자인 청구의 ○○농역이 2005. 1. 5.까지 신고납입할 2004년도 12월

분 도축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2005. 1. 29. 결정한 이상 이때에 이 사건 도축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하겠으므로, 청구의 ○○농역이 청구인에게 도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기 이전에 이 사건 도축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또한 조세채권은 세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세법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청구의 ○○농역과 영업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의 ○○농역이 신고납입하여야 할 2004년도 12월 분 도축세를 납부한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법상 효력이 없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도축세 납입통지는 제2차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납입통지로서 잘못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2005. 10. 31. 제2005-467호 (취득세 등 부과처분 기각)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기독교적인 화해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한 협의회를 가지며 모든 분야에서 봉사할 일꾼을 훈련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리스찬아카데미, 대화문화네트워크, 시민사회지도자교육원, 바람과물연구소 등의 운영기구를 두고 교회의 갱신과 일치,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 국내외의 교회 및 기타 종교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한 각종 대화모임, 문화향상과 사회복지 및 지원사업, 연구조사 및 출판, 시민사회의 지도자와 남북화해를 위한 지도자 훈련,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연구사업 등을 수행한다고 등재되어 있으며, 2004.12.16. 개최한 정기이사회회의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사업을 종교간 대화와 지역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종교·교회 프로그램”과 생태위기라는 21세기형 물음을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녹색화 프로그램” 및 우리사회의 변화를 진단하고 새로운 사회비전을 모색하는 “사회분야 프로그램”으로 재편하고, 각 프로그램마다 연구모임, 대화모임, 교육모임 등의 행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종교·교회 프로그램”은 남과 북의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연구모임인 “공생의 영성 신학포럼”, 지역에서 생명선교를 실천하는 목회자들의 대화모임인 “생명목회 콜로키움”, 6대 종단 젊은 성직자들의 대화모임인 “젊은 종교인 대화모임”, 6대 종단 예비 성직자들의 대화캠

프인 “종교청년 대화캠프”로 구분하고 있고, 그 사업의 취지가 “공생의 영성 신학포럼”은 한국 교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신학자들을 초청하여 6·25문제, 통일문제,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토론하고 정리한 후 향후 있을 한국 교회 보수와 진보간 대화모임의 밑거름이 되게 함에 있고, “생명목회 콜로키움”은 지역에서 앵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을 찾아내고 네트워킹하여 현장의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하며, 향후 마을과 지역단위에서 공생체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며, “젊은 종교인 대화모임”은 6대 종단 젊은 성직자들이 현장에서 서로 종교간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모색과 함께 실질적인 네트워크이 형성되게 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발굴하는 장이 되게 함에 있고, “종교청년 대화캠프”는 성직에 입문하기 전에 6대 종단 예비 성직자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종교적 편견을 미연에 방지하고 종교간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함에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예배·축전·종교교육·종교의식·선교 등 여러 가지 종교행사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 종교를 보다 널리 알리는 종교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라기 보다는 여러 종단의 종교인들이 모여 생명 및 환경, 사회문제 등을 연구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 2. 25. ○○시 ○○구 ○○동 ○○번지 대지 1,140.0㎡ 및 그 지상건축물 793.94㎡(지하 2층·지상 2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지방세 비과세신청을 하자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반려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2005. 3. 22. 그 취득가액(1,5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400,000원, 농어촌특별세 3,040,000원, 등록세 30,400,000원, 지방교육세 6,080,000원, 합계 69,920,000원을 신고한 다음 2005. 3. 28.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선교사업(프로그램사업)을 수행하는 자료실, 회의 및 사무실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2005년도 목적사업부문 지출예산의 내역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를 그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법인등기부와 정관에 등재되어 있는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고,

예비적으로 프로그램 사업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와 경상비 등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목적사업비용에 해당되므로, 프로그램사업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한 비용이 총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66. 4. 22.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 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으로서,

기독교적인 화해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한 협의회를 가지며 모든 분야에서 봉사할 일꾼을 훈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독교계의 갱신과 일치,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 국내외 교회와 종교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일,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한 각종 대화모임, 문화향상을 위한 일, 사회복지 및 지원사업(청소년복지·노인복지·지역사회복지 외), 연구조사, 출판에 관한 일, 민주사회발전과 민족화해를 위한 훈련과 사회봉사요원 교양훈련 및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과 2005. 3. 2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1층은 휴게실, 부엌, 발간자료 열람실 등으로, 2층은 이사장실, 사무실(직원 7명), 자료실, 회의실 등으로, 3층은 ○○마당(강당, 야외 마당), 세미나 및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기독교적인 화해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한 협의회를 가지며 모든 분야에서 봉사할 일꾼을 훈련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리스찬아카데미, 대화문화네트워크, 시민사회지도자교육원, 바람과물연구소 등의 운영기구를 두고 교회의 갱신과 일치,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 국내외의 교회 및 기타 종교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한 각종 대화모임, 문화향상과 사회복지 및 지원사업, 연구조사 및 출판, 시민사회의 지도자와 남북화해를 위한 지도자 훈련,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연구사업 등을 수행한다고 등재되어 있으며, 2004. 12. 16. 개최한 정기이사회 회의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사업을 종교간 대화와 지역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종교·교회 프로그램”과 생태위기라는 21세기형 물음을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녹색화 프로그램” 및 우리사회의 변화를 진단하고 새로운 사회비전을 모색하는 “사회분야 프로그램”으로 재편하고, 각 프로그램마다 연구모임, 대화모임, 교육모임 등의 행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종교·교회 프로

그램”은 남과 북의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연구모임인 “공생의 영성 신학포럼”, 지역에서 생명선교를 실천하는 목회자들의 대화모임인 “생명목회 콜로키움”, 6대 종단 젊은 성직자들의 대화모임인 “젊은 종교인 대화모임”, 6대 종단 예비 성직자들의 대화캠프인 “종교청년 대화캠프”로 구분하고 있고, 그 사업의 취지가 “공생의 영성 신학포럼”은 한국 교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신학자들을 초청하여 6·25문제, 통일문제,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토론하고 정리한 후 향후 있을 한국 교회 보수와 진보간 대화모임의 밑거름이 되게 함에 있고, “생명목회 콜로키움”은 지역에서 앵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을 찾아내고 네트워크하여 현장의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하며, 향후 마을과 지역단위에서 공생체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며, “젊은 종교인 대화모임”은 6대 종단 젊은 성직자들이 현장에서 서로 종교간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모색과 함께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하며 새로운 리더쉽을 발굴하는 장이 되게 함에 있고, “종교청년 대화캠프”는 성직에 입문하기 전에 6대 종단 예비 성직자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종교적 편견을 미연에 방지하고 종교간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함에 있는 점과 “종교·교회 프로그램”과 관련한 2004년도 지출액(68,300천원)은 총 지출액(1,107,600천원)의 6.2%, 2005년도 예산액(25,500천원)은 총 예산액(710,500천원)의 3.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또한

종교 및 교회분야 조사연구(22,000천원)와 종교청년대화캠프(3,000~3,500천원)로 부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예배·축전·종교교육·종교의식·선교 등 여러 가지 종교행사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 종교를 보다 널리 알리는 종교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라기 보다는 여러 종단의 종교인들이 모여 생명 및 환경, 사회문제 등을 연구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층은 휴게실과 발간자료 열람실 등으로, 2층은 이사장실과 직원 사무실 및 회의실 등으로, 3층은 ○○마당(강당, 야외 마당)과 세미나 및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2005. 6. 15. ○○시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김○○)의 현지확인 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예배·축전·종교교육·종교의식·선교 등 교회의 중추적인 종교활동용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이라기 보다는 연구와 대화 또는 토론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고,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예비적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2005. 10. 31. 제2005-470호 (취득세 등 부과처분 기각)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그 매각대금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지급한 경우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3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조달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고 그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그 매각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이상 유동화증권발행관련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이후 지급한 비용이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의 1필지의 토지 1,412.6㎡와 동 지상 건축물 9,736.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의 유한회사 한국○○리얼티(2002.×.1×.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로

부터 2002. 10. 8. 취득한 후 같은 날 과세표준을 17,500,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5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5,000,000원, 등록세 525,000,000원, 지방교육세 105,00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4. 9. 9.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지방세무주사 고○○외 2명)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간접비용 1,825,359,797원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3,808,620원, 농어촌특별세 4,015,780원, 등록세 65,712,940원, 지방교육세 12,047,360원 합계 125,584,700원(가산세 포함)을 2004. 11. 18. 부과 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2005. 2. 15.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05. 5. 30.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시장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일부 과다산정된 것을 확인하여 취득세 42,114,700원, 농어촌특별세 3,860,510원, 등록세 63,172,060원, 지방교육세 11,581,540원, 합계 120,728,8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0. 1. 22.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 10. 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유동화증권 매각대금으로 취득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자산유동화증권발행과정에서 발생한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유동화증권판매 주관사에 지급한

수수료, 유동화전문회사의 신용평가수수료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취득 금액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융비용이므로 동 비용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설령 유동화증권 발행관련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에 포함된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02. 10. 8.까지 발생한 비용만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그 매각대금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지급한 경우에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에 계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

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 10. 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과세표준을 17,500,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4. 9. 9. ○○시 세무조사(지방세무주사고○○외 2명)에서 유동화증권발행관련 비용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수수료 등 1,825,359,797원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과세표준이 일부 과다산정된 것을 확인하여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산유동화증권발행과정에서 발생된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유동화증권판매주관사에 지급한 수수료, 유동화전문회사의 신용평가수수료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취득금액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융비용이므로 동 비용은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취득 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2. 10. 1. 청구의 ○○은행과 계약기간을 2002. 10. 1.부터 2005. 9. 30.까지로 하고 물품대금채권과 장래에 발생할 서비스이용료채권 및 받을 어음을 신탁원본으로 하는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액면가액 240억원의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한 후 ○○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의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청구의 ○○유동화전문회사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증권을 통하여 시장에 매각한 자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

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법인장부(계정별 원장)등에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그 매각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 취득금액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격은 아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에 포함된다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유동화증권발행관련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에 포함된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02. 10. 8.까지 발생한 비용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3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조달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고 그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그 매각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이상 유동화증권발행관련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이후 지급한 비용이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유동화증권발행관련비용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라고 결정한 ○○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